농림축산식품부	**보도자료**	힘내라 대한민국
2020년 9월 1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동물복지정책과 과 장 안유영 (044-201-2371), 사무관 정희선(2374) / 제공일 : 9월 15일(총 3매)		

걱정없이 동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!

《주 요 내 용》

◇ **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('18년~)**

○ (지원요건) : 유기동물을 **지자체 동물보호센터**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

○ (지원내용) : 입양 시 소요되는 **동물등록비, 중성화수술비** 등

* 내장형동물등록비, 예방접종비, 진료·치료비, 중성화수술비, 미용비의 일부금액

○ (지원금액) : **마리당 최대 10만원**

* 마리당 20만원 한도로 정부가 50%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,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며 지원금액을 늘릴 수 있음

❑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**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**하고 있다.

○ 매년 **유기동물은 증가**하는 반면 **유기동물 입양률**은 **정체**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,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**입양을 활성화**하기 위함이다.

* 유실·유기동물현황 : ('16) 90천마리 → ('17) 103→ ('18) 121 → ('19) 136

* 입양마리수 : ('16) 27천마리 → ('17) 31→ ('18) 33 → ('19) 36

❑ 각 **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**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**해당 시·군·구청**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.

○ 동물보호센터에서 **입양확인서**를 발급받아 **동물등록**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**해당 시·군·구청**에 **입양 후 6개월 이내**에 신청하면 된다.

○ 다만, **지원항목**은 **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 등***이며 **해당 영수증을 첨부**하여 신청하면 **마리당 최대 10만원**까지 지원**한다.

* 지원내용 : 중성화수술비, 질병치료비, 예방접종비, 내장형동물등록비, 미용비

**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10만원 지원, 20만원 이하일 경우 소요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구조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·군·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할 필요

○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**동물보호관리시스템**(www.animal.go.kr)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.

❑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“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”면서,

○ “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,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, 이메일·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* (**현재**) 마리당 20만원 비용 소요 시, 정부 최소 10만원 지원
→ (**‘21년**) 마리당 25만원 비용 소요 시, 정부 최소 15만원 지원

- 시·군·구의 여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은 증가할 수 있음

참고 **2020년 유기·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계획**

❑ **지원대상** : 지방지차단체장이 지정한 '동물보호센터'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

* 「동물보호법」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가 입양한 경우, 해당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에게 입양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

❑ **신청기한** :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

❑ **지원내용** : 내장형동물등록비, 질병진단비, 예방접종비, 미용비, 치료비, 중성화수술비

❑ **지원비용** : 최대10만원(국비4,지방비6)

❍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: 10만원 지원

❍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: 소요비용의 50%지원

*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거나, 동물등록비, 중성화수술비 추가 지원 등 지원금액, 지원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

❑ **신청서류** : ①입양비지원신청서 ②분양확인서 ③진료비 등 영수증 ④입금통장사본 ⑤신분증 사본 ⑥동물등록증

⟹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(분양확인서, 동물등록, 통장명의자 등)

* 동물보호단체: 신청서, 분양확인서(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 및 단체가 개인입양자에게 발급한 확인서), 단체등록(허가)증사본, 동물등록증(개인입양자에게 변경 신고된 등록증), 단체 통장사본

❍ 신청서류 제출방법 :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,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FAX, 담당자 이메일

* 입양비 신청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 필요

❑ **기타 행정사항**

❍ 동물등록(고양이 포함*)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

* 고양이의 경우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지역(서울·경기 등)에 한한다.

❍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

【입양비 지원절차】

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단체	입양 →	입양자	청구 →	시군구
상담/교육 분양확인서발급		동물등록, 병원치료 등 (내장칩동물등록,중성화수술, 질병치료, 예방접종, 미용)		동물등록 등 확인, 입양비 지원 (입양자)